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가단286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민태호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정범영, 한지윤

변론 종결 2022. 9. 30.

판결 선고 2022.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개명 전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55,516,0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5116,0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은 2015. 6.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 CRM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영상 제작 접수된 작업에 대해 Adobe After Effects CS6로 작업된 프로젝트에 고객 데이터를 적용해 동영상을 제작하며 제작된 동영상을 F 스트리밍 서비스1)에 등록하고 제작된 동영상 정보 및 F 스트리밍 데이터 정보를 CRM에 기록하는 일련의 자동화 프로그램'(이하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89,800,000원에 개발하여 C에게 공급하되, 계약금액의 50%인 44,900,000원은 계약 시 C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4,900,000원을 대신하여 C이 제작한 동영상 제작용 프로젝트(1분대 영상 6편, 3분대 영상 8편, 이하 'G'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2)는 2015. 6.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 고객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프로그램'(이하 'CRM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34,400,000원(이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대금이 37,84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개발하여 주식회사 H에게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CRM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후 1년간 원고가 CRM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주식회사 H는 위 용역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5일 1/12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하고, 제1계약과 제2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9.경 주식회사 H에게 CRM 프로그램을, 2015. 12.경 C에게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급하였고, C은 2015. 6. 24.부터 2015. 12.경까지 제1계약 용역대금 89,800,000원 중 총 44,9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15. 10. 26.까지 제2계약 용역대금 전액인 37,8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제2계약에 따른 CRM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으로 2016. 1. 7.부터 2016. 3. 4.까지 총 2,52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17. C 측에 G{1분대 영상 6편(베이비2, 웨딩2, 스냅2), 3분대 영상

8편(베이비3, 웨딩3, 스냅2))을 2015. 12.내에 제작,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2016. 1. 6. 원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G의 제작이 늦어지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원고는 2016. 1. 12. C에게 G 제작을 늦춰 줄 것을 요청하며, G을 대신하여 현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수정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6. 2. 23. C 측에 1분대 G 4편의 제작을 요청하였고, C은 2016. 2. 29. 1분대 샘플영상 4편을 원고에게 송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C이 송부한 영상을 수정하거나 다시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2016. 3. 3.부터 3. 4.까지 수정된 샘플영상 4편을 송부한 뒤로 더 이상 원고에게 G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C은 2016. 3. 9. 원고에게 제1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C과 소외 회사는 2016. 6. 17.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684, 이하 위 소송의 반소,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합하여, '종전 관련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7가단5173971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6) 원고는 종전 관련소송의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2024(본소), 2020나22031(반소)}에서 2021. 6. 23. "C은 제1계약에 따른 G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가액에 해당하는 44,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21.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 당시 법원은 "원고는 2015. 12. 16.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의 공급이 완료되어 G 제공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6. 1. 12. 그 스스로 G의 공급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과 원고는 G 제공의무의 이행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 하에 G 제작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반소장부분 송달일인 2017. 9.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C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C의 무자력

1) 피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와 C은 2013. 9.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C은 2016. 12. 26.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6. 접수 219327호)를 마쳤다.

3)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K주식회사, 채무자 D(C의 개명 전 이름)로 된 근저당이 3개 설정되어 있었다. 채권최고액은 각 2013. 9. 11.자 345,600,000원, 2015. 7. 24.자금 84,000,000원, 2015. 10. 23.자 금 36,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시기인 2013. 9. 11.경 C이 K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288,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K주식회사에 대한 C의 대출잔액은 388,000,000원이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 .

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

피고는 2017. 11. 6.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7. 12. 29. 이에 관하여 L,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거래가액은 62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 11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44,9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제1계약의 잔금채권 내지 잔금채권에 갈음하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G 제공의무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거절 상태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G 제공의무 이행기 연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잔금채권은 원고가 종전 관련 소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여 C에게 반소장부분이 송달된 2017. 9.

13.에야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G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며 그 상당의 잔금 44,900,000원을 청구한 종전 관련 소송의 반소장 송달시에 이 사건 잔금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는 2015. 12.경 제1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점, G 제공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C은 2016. 3. 9. 원고에게 제1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6. 6. 17.경 종전 관련소송을 제기한 점, 이후 원고가 종전 관련소송에서 2017. 9.경 반소를 제기하여 금전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잔금채권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 위 채권이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잔금채권은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많아야 312,500,000원(= 거래가액 625,000,000원 $\times$ 1/2)이라 할 것이고, 당시 C과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465,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388,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위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지분 가액을 상회하므로, 결국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하였더라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는, 'C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부로서 공유지분 1/2으로 구매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일자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가 동일하고, C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가격이 430,000,000원이고 동일한 시기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이 345,600,000원으로 대출금액 전액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인되는 점, 피고가 자신의 고유자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 C와 피고가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거주지로 4년 이상 사용하였고, 피고가 2013. 9.경부터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은 점, 오히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1951 사건과 2017카단202427 사건 당시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위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결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이의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청구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인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증거와 맞지 않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K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C이 K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은 288,000,000원으로 매수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가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정계선

- 1)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 2) '주식회사 I'에서 2016. 4. 25. '주식회사 J'로, 2018. 5. 28. '주식회사 H'로 상호가 각각 변경되었다.
- 3) 피고 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 C의 무자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가

C의 무자력 여부를 다투며 자백을 취소하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있다.